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493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09 월 18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장애인건강보건통계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보건복지부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117102호 [2019.08.14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09.15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사유
작성항목 (결과표)	○ 결과표 · 7개 부문 80개	○ 결과표 · 8개 부문 86개 (추가 6, 만성질환 부문) *건강검진 수검률은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공표	○ 보건의료 제도 변화를 반영*하여 일부 지표 추가 세부 항목 정비 * 보건복지부 고시로 11개 만성질환 선정 및 이에 대한 통계요구 반영 ○ 지역 및 사업장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군구 수검률 추가